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 식음료 산업

## 서문

본 간행물은 식사, 알코올 함유 음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판매하는 사업체(예: 식당, 바, 호텔 및 케이터링 회사 등)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 판매세 및 사용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숙박 시설에서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무료 식음료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 711)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30~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판매자 허가증 취득, 재판매 증명서 사용, 판매세 및 사용세 징수 및 보고, 사업의 인수, 매각 또는 중단, 기록 보관과 관련한 일반 정보를 다루는 [간행물 73\(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을 보완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규정 및 본 간행물에서 참조된 다른 간행물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웹사이트](#) 또는 본 간행물의 [추가 정보](#) 섹션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 간행물이나 다른 간행물 개선을 위한 제안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주소로 직접 의견 또는 제안을 보내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94279-0044

참고: 본 간행물은 표지에 명시된 간행물 작성 시점에 유효한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과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결정은 법률에 근거하며 본 간행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섹션페이지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일부 매출	1
식당, 바, 호텔 및 유사 시설	2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식품	2
파크렛	2
테이크아웃 판매 식품	3
비과세 매출	5
연회 시설 요금	5
케이atering 업체	7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	11
무료 식음료—호텔 및 유사 숙박 시설	12
기타 세금 문제	15
직원 식사	15
호텔 미니바 매출	15
식당이나 호텔 외의 소매업체가 부과하는 시설 요금	15
소매업체(시설)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요금	15
고객이 식음료를 공급하거나 케이atering 업체와 계약할 경우 시설 요금	16
팁, 서비스 요금 및 입장료	17
메뉴 1개 가격으로 2개 제공	17
판매세 환급	17
오늘의 특가 상품(DDI)	18
재고 관리	18
기록 보관	19
온라인 주문 서비스	20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	20
매출 축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장치	21
추가 정보	22
부록: 80/80 규칙 테스트	24

##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일부 매출

식당, 바, 호텔, 케이터링 회사 및 유사 시설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시설에서 판매되는 일부 식품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비과세 식품 매출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규정 1603](#), *과세 식품 매출(Taxable Sales of Food Products)*을 참조하거나,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 항목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를 설명합니다.

- 학교 급식
- 종교 단체의 식사 판매
- 병원과 같은 기관의 식사 및 식품 판매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식사 프로그램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배달되는 식사
- 62세 이상의 콘도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식품
- 주간 무역 또는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항공사에 판매된 항목

이와 더불어 [규정 1597](#), *특정 비영리 단체에서 양도 또는 매각한 자산(Property Transferred or Sold by Certain Nonprofit Organizations)* 및 [간행물 18](#),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s)*에서도 비영리 청소년 단체 및 학부모-교사 단체가 식품을 판매할 경우 세금이 적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식당, 바, 호텔 및 유사 시설

이 섹션에서는 식당 및 유사 시설에서 판매되는 식음료 과세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과 관련한 정보는 [기타 세금 문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직원 식사
- 자체 소비용 무료 식음료
- 식사와 함께 판매되는 재사용 불가 품목
- 팁, 서비스 요금 및 입장료
- 메뉴 1개 가격으로 2개 제공

연하장, 커피잔, 판촉물 등 다른 매출 유형의 과세 여부를 알아보려면 [간행물 73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Your California Seller's Permit\)](#)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개요

식음료 매출의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식음료,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하단 참조)
- 식음료 테이크아웃 판매, 과세 또는 비과세일 수 있음(참조: [테이크아웃 판매 식품](#)).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 재판매를 위한 판매 및 사업장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차가운 식품 판매에 대한 정보는 [비과세 매출](#)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식품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제공되는 식음료 매출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이 구매한 품목을 소비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식사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 또는 카운터를 제공하거나 트레이, 유리잔, 그릇 또는 기타 식기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장이 쇼핑몰에 위치하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식당 시설 근처에 있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 푸드코트 내부나 근처 또는 식사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제공되는 구역 근처입니다.

식음료가 사업장에서 먹도록 제공되거나 먹을 수 있도록 개별 반환 용기에 제공된 경우 식음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식품 또는 음료가 단품으로 판매되는지, 식사의 일부로 판매되는지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식사란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는 식품 또는 식품과 식용 비식품(예: 탄산음료, 알코올 음료)의 콤보 메뉴입니다.

### 파크렛

파크렛은 한 곳 이상의 주차 공간을 공원으로 전환하여 앉을 자리, 조경 식물, 자전거 주차 공간 및 예술 작품 등의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크렛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테이블 또는 카운터로 사용 가능한 대형 목재 상판과 빌트인 벤치 좌석을 더해 설계된 파크렛이나, 식당에서 제공하는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할 수 있는 파크렛이 있습니다.

사실 파크렛이 허용되는 도시가 있는 반면, 파크렛은 고객뿐 아니라 대중도 이용 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일부 도시의 경우 소매업체가 파크렛 내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고객이 식당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공원으로 가져와 소비해야 합니다. 한편, 식당 직원이 파크렛에서 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파크렛을 관리하는 경우 파크렛은 해당 사업장의 '시설'로 간주되므로 파크렛 구역에서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식품 및/또는 음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고객이 카운터에서 식품 및/또는 음료를 가져가는지 혹은 풀서비스로 제공되는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식당이 파크렛 내에서 추가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하는지에 따른 차이도 없습니다. 식당에서 파크렛을 관리하는 경우 파크렛 자체가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세한 정보는 월요일~금요일(주 지정 공휴일 제외), 오전 8시~오후 5시(태평양 시간)까지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 : 711)로 문의하십시오.

## 테이크아웃 판매 식품

식품이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판매되는 경우, 판매세 과세 여부는 매출이 80/80 규칙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80/80 규칙

다음과 같은 경우 80/80 규칙이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 사업체 총 수입의 80% 이상이 식품 판매에서 발생한 경우(참고: 주류 및 탄산음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 소매 식품 매출의 80% 이상이 다음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설비를 갖추고, 준비하거나 제공한 식품의 판매(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식품 참조)
  - 식사 또는 따뜻한 조리 식품 판매(음료 외의 따뜻한 조리 식품 참조).
  - ‘드라이브인’ 방식의 식품 판매. ‘드라이브인’이란 주로 고객이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는 주차 시설이나 그 인근에서 통상적으로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식품을 제공합니다. 단, 해당 식품은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식품 서비스 사업을 인수했거나 새로운 식품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경우 80/80 규칙이 적용 여부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중인 사업체에서 최근 제품 구성을 변경했거나 식품 제공 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도 80/80 규칙 적용 여부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조리 식품을 추가로 판매하기 시작했거나 날씨가 좋을 때 야외에서 고객에게 좌석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사업장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80/80 규칙 평가는 지점별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여러 지점을 소유한 경우 80/80 규칙이 한 지점에 적용되나 다른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식당-베이커리와 같은 복합 지점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80/80 규칙 테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 80/80 규칙이 적용되는 테이크아웃 매출

80/80 규칙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차가운 식품의 테이크아웃 주문 판매는 별도로 평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판매된 모든 식품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매출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비과세 매출](#) 참조)
- 매출이 80-80 규칙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테이크아웃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도록 특별히 선택한 경우 이에 포함되는 판매:
  - 차가운 식품
  -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따뜻한 베이커리 제품 및 따뜻한 음료

해당 제품의 매출은 고객용 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테이프와 같은 증빙 문서를 통해 별도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등록기에는 테이크아웃 판매된 차가운 식품용 개별 키나 해당 매출을 표시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 문서가 없을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80/80 규칙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특별 옵션을 선택한 경우, 80/80 규칙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테이크아웃 매출을 신고합니다(하단 참조).

## 80/80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테이크아웃 매출

### 단품 판매 품목

다음 정보는 단품 판매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콤보 패키지(단일 가격으로 두 개 이상의 품목이 함께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 관련 정보는 하단의 **콤보 패키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음료

다음 음료의 매출은 별도의 가격으로 테이크아웃 판매될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커피, 따뜻한 차, 라떼, 모카, 핫초콜릿 등 따뜻한 음료. **참고:** 따뜻한 수프, 부용, 콩소메는 따뜻한 음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판매 시 과세 대상입니다(하단에서 **음료 외의 따뜻한 조리 식품** 참조).
- 과일 음료, 우유 및 아이스티 등 탄산 무함유 음료.

다음 음료의 매출은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 탄산음료 또는 탄산수 등 탄산 함유 음료
- 알코올 음료

### 차가운 식품(차가운 음료 외)

차가운 식품에는 차가운 샌드위치, 밀크셰이크, 과일스무디, 아이스크림, 콜드샐러드, 냉장 베이커리 품목 등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콤보 패키지의 일부로 차가운 식품이 판매될 경우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콤보 패키지** 참조).

**예시:** 에그샐러드 샌드위치가 테이크아웃 판매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콤보 패키지의 일부로 에그샐러드 샌드위치를 판매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단 **예시** 참조).

### 따뜻한 조리 식품(음료 외)

따뜻한 조리 식품의 테이크아웃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뜻한 베이커리 품목 관련 정보는 하단의 **예외**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식품을 실온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 따뜻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식품을 실온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의 예시: 그릴 샌드위치, 따뜻한 그레이비 소스에 적신 샌드위치, 적외선 조명, 스팀테이블 또는 전자레인지의 사용. 따뜻한 조리 식품의 예시: 핫 샌드위치, 피자, 바비큐 치킨, 수프, 콩소메, 부용, 스테이크 등.

해당 식품은 따뜻한 식품으로 판매될 용도이므로, 판매 시점에 식었다 하더라도 '따뜻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차가운 테이크아웃 식품을 구입하여 일반인 이용이 가능한 전자레인지에서 데울 경우 해당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차가운 식품의 테이크아웃 판매로 간주됩니다.

**예외:** 핫 베이커리 제품의 테이크아웃 매출은 콤보 패키지의 일부로 판매되지 않는 한, 판매 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하단 참조).

### 콤보 패키지

콤보 패키지는 단일 가격으로 두 개 이상의 품목이 함께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판매 시 과세 여부는 판매되는 콤보 패키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따뜻한 품목이 포함된 패키지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콤보 패키지에 따뜻한 샌드위치나 수프 등의 따뜻한 조리 식품 혹은 커피나 핫초콜릿 등의 따뜻한 음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예시:** 따뜻한 커피와 도넛 콤보를 \$1.50의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따뜻한 파스트라미 샌드위치와 아이스티 콤보를 \$4.50에 판매하는 경우, 각 콤보 패키지에는 따뜻한 식품이나 따뜻한 음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매 가격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따뜻한 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콤보 패키지에 차가운 식품과 탄산음료가 포함된 경우 탄산음료 판매 가격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콤보 패키지에 차가운 식품과 탄산음료 또는 주류를 제외한 차가운 음료가 포함된 경우 패키지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콜드샌드위치, 감자칩, 아이스티 등의 밸류 패키지를 단일 가격으로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음료가 탄산음료인 동일 패키지를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에서 탄산음료 가격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외—반환 용기.* 차가운 식품 콤보가 개별 반환 용기(예: 유리 그릇)에 담아 1인 식사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판매는 제공되는 식사의 판매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비과세 매출

다음 품목의 세금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 차가운 식품 판매 - *현장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먹지 않는 형태인 경우.* 고객이 추가로 조리해야 하거나, 일반적으로 1인 소비용이 아닌 크기로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은 '현장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 피자 판매는 고객의 추가 조리가 필요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자 샐러드 1쿼트, 아이스크림 1쿼트 또는 파이 1판이 현장에서 소비를 위한 식기나 그릇 없이 판매될 경우, 일반적으로 1인이 소비하는 양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의 추가 예시는 [규정 1603 과세 식품 매출](#)을 참조하십시오.

-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 재판매를 위한 판매 등 과세 대상이 아닌 판매.

## 연회 시설 요금

### 시설 사용

*참고:* 다음 정보는 식당, 호텔 및 유사 시설에 적용됩니다.

식사, 식품 또는 음료가 제공되는 식당, 호텔 및 유사 시설에서 부과한 요금은 송장에 별도로 명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 파티를 위한 연회장 사용 요금으로 \$100을 부과할 경우 해당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고객이 준비한 식음료 서빙 요금

고객이 준비한 식음료 커팅 및 서빙에 대한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준비한 와인을 여는 데 부과되는 요금인 '콜키지 피'는 과세 대상입니다.

### 댄스플로어, 연단, 무대 장비

고객이 식음료 제공 행사를 준비하는 경우 식사 또는 식음료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자산 사용료를 해당 고객에게 청구하면 귀하는 해당 자산의 임대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연사를 위한 특수 조명, 사운드 또는 비디오 시스템, 댄스플로어, 무대 및 엔터테인먼트 옵션에만 관련된 장식 소품 등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자산 임대인은 고객에게 부과한 해당 자산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산 구입 또는 대여 시 캘리포니아주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한 경우, 고객에게 부과된 해당 자산 사용료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 구입 또는 대여 시 캘리포니아주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부과된 자산 대여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규정 1660, 일반적인 개인 유형자산 임대\(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In General\)](#) 및 [간행물 46, 개인 유형자산 임대\(Leasing 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참조하십시오.



### 식사 및 식음료 제공 시 사용되는 항목

귀하는 식사, 식음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 유형자산(예: 테이블, 의자, 유리잔, 식기, 그릇, 린넨 등)의 소비자로 간주됩니다. 소비자는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하여 해당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 해당 품목을 고객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닌 식사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케이터링 업체

이 섹션에서는 케이터링 업체가 판매하는 식음료 과세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라 고객의 시설이나 고객이 공급한 시설에서 식사,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케이터링 업체로 간주됩니다. 테이크아웃 식품을 판매하거나 식품 배달만을 수행할 경우 케이터링 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식품 제공을 위한 그릇, 식기류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매출의 과세 여부는 **식당, 바, 호텔 및 유사 시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호텔, B&B 인 및 기타 숙박 시설에서 식음료 가격이 객실 요금에 포함된 경우, 숙박객에게 판매되는 식음료에는 본 섹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매출의 과세 여부는 **무료 식음료—호텔 및 유사 숙박 시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케이터링 업체에 대한 세금 적용

#### 식음료

케이터링 업체가 부과한 식음료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식기, 테이블린넨 및 테이블

식기에는 식탁에서 음식을 서빙하고 식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릇, 수저, 유리잔 등이 포함됩니다. 식사 준비 및 서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식기, 테이블린넨, 테이블 및 기타 품목 사용료가 포함된 식사에 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는 경우 일시불 요금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식기, 테이블린넨, 테이블 등을 고객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하여 식기, 테이블린넨, 테이블 등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고객을 위한 식사, 식음료를 준비하여 제공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그릇, 린넨, 은식기, 유리잔 등의 품목을 대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케이터링 업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며 귀하는 해당 품목의 임대인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 시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한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임대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산 구입 또는 대여 시 공급업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부과된 항목별 대여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규정 1660, 일반적인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In General)** 및 **간행물 46,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ing 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참조하십시오.

**참고—일회용품:** 종이접시, 냅킨, 플라스틱 식기, 유리잔, 컵, 테이블매트 등의 일회용 식기 관련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청구서에 항목별 요금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일회용 식기는 식사 또는 식음료와 함께 판매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식음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개인 유형자산'에는 식사 및 식음료 서비스를 위한 임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일부에 해당하는 텐트, 캐노피, 서브플로어, 발전기, 공기압축기, 조명, 전기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 인건비 및 준비 비용

식음료 제공 및 준비를 위해 귀하, 직원 또는 하청업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이 적용됩니다.

#### 고객이 준비한 식음료 서빙 요금

웨딩 케이크와 같이 고객이 준비한 식품의 커팅 및 서빙에 대한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제공한 음료의 개봉 및 서빙에 대한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준비한 와인을 열어 서빙하는 데 부과되는 요금인 '콜키지 피'는 과세 대상입니다.

#### 댄스플로어, 무대 장비 등

댄스플로어, 연단, 사운드/비디오 시스템 또는 기타 관련 장비의 구입 또는 대여 시 판매세나 사용세를 납부한 경우, 즉, 고객을 대상으로 식사나 식음료의 서빙 혹은 준비와 무관한 품목을 임대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산

구입 또는 대여 시 공급업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부과된 대여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규정 1660](#), 일반적인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In General*) 및 [간행물 46](#),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ing 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주차장 직원, 휴대품 보관소 직원, 보안 요원 및 엔터테인먼트

상기 언급된 직원에 대한 요금은 해당 직원이 식음료 서비스에도 참여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개인 유형자산

프로그램 및 메뉴 인쇄물, 꽃 또는 풍선 장식, 얼음 조각상, 종이 패드, 펜, 플립 차트 등의 기타 품목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요금은 과세됩니다. 사진 촬영 요금도 사진 작가의 시간당 요금 공제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68](#) 사진 작가, 사진 보정가 및 사진 인화실(*Photographers, Photo Finishers, and Film Processing Laboratories*)을 참조하십시오.

### 코디네이터 비용

개인 유형자산의 판매와 관련한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전문 플래너 또는 이벤트 코디네이터 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피로연 계획의 주요 목적이 식음료의 준비 및 제공인 경우, 피로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 고려 사항

#### 재판매를 위한 판매

귀하가 식사 또는 식음료를 준비하여 소매점에서 해당 품목을 판매할 이에게 제공하고, 소매점 판매에 대한 세금이 보고될 경우 귀하의 판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는 유효한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규정 1668](#), 재판매를 위한 판매(*Sales for Resale*) 및 [간행물 103](#), 재판매를 위한 판매(*Sales for Resale*)를 참조하십시오.

####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면세입니다. 면세 판매를 증빙하려면 해당 판매가 미국 정부와의 직접 거래라는 점을 보여주는 미 정부 구매주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청구된 면세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판매 송장 및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신용카드는 미국 정부 소유여야 합니다. 판매 대금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결제자가 정부로부터 환급금을 받더라도 해당 판매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면세 판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02](#)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Sales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를 참조하십시오.

####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사

다음과 같은 경우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 학교의 학생들에게 식사 및 기타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학교, 교육구 또는 학생 단체에서 고용한 경우
- 학교가 아닌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식사 및 기타 식품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그러나, 계약서 및 기록에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다른 목적(예: 수업일의 나머지 시간에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 및 기타 학교 활동)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설비 및 장비를 학교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
- 식사를 구입하는 학생이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을 학교의 다른 직원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학교 급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03](#), 과세 식품 매출 및 [규정 1506](#), 기타 서비스 기업(*Miscellaneous Service Enterprises*)을 참조하십시오.



## 케이터링 업체 송장 예시 A

### Catering 4 U 4 Star Food & Service

125인분 x 각 \$24	\$3,000.00 <sup>1</sup>
식사 서비스 비용 20%	600.00
센터피스 장식, 풍선, 파티 기념품	1,200.00
댄스플로어 대여	500.00 <sup>2</sup>
소계	5,300.00
세금(\$5,300 x 8.25%)	437.25
총계	<u>\$5,737.25</u>

이 예시에서 고객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이 예시와 다른 예시에서는 8.25%의 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보여주고 있지만 케이터링 서비스가 수행되는 실제 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세 및 사용세의](#) 현재 세율을 확인하십시오.

#### <sup>1</sup> 식사

식사 준비 및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된 품목에 대해 송장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은 없습니다. 해당 요금은 식사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기, 테이블린넨, 테이블 및 식사 준비와 제공에 사용된 기타 품목의 사용료를 비롯한 모든 식사 요금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든 일시불 요금으로 청구하든 과세 대상입니다(식기, 테이블린넨 및 테이블 참조). Catering 4 U는 식사 준비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sup>2</sup> 댄스플로어 대여료

이 예시에서는 Catering 4 U가 댄스플로어 대여를 위해 공급업체에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송장의 댄스플로어 대여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Catering 4 U가 댄스플로어 대여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송장의 대여료 \$500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규정 1660, 일반적인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In General\)](#) 및 [간행물 46,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ing 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참조하십시오.



## 케이터링 업체 송장 예시 B

### Ye Olde Wedding Chapel

125인분 x 각 \$18	\$2,250.00
식사 서비스 비용 20%	450.00
자기, 크리스탈, 은식기, 린넨 대여료	1,000.00 <sup>3</sup>
센터피스 장식, 풍선, 파티 기념품	1,200.00
소계	4,900.00
세금(\$4,900 x 8.25%)	404.25
보안 요원	150.00 <sup>4</sup>
총계	<u>\$5,454.25</u>

이 예시에서 보안 요원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요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sup>3</sup>자기, 크리스탈, 은식기, 린넨 대여료

이 예시에서 케이터링 업체는 행사에 사용된 자기, 크리스탈, 은식기 및 린넨 대여료를 개별 항목별로 분류했습니다. 자기, 크리스탈, 은식기 및 린넨은 식사 준비 및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되므로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도 해당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sup>4</sup>보안 요원

보안 요원 고용 요금은 해당 직원이 식음료 서비스에도 참여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

이 섹션에서는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식음료 과세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직원 식사, 무료 및 자체 소비용 식음료, 팁과 기타 요금 관련 정보는 [기타 세금 문제](#) 섹션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식음료 매출 과세

일반적으로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 내에서 판매되고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식품 매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로는 스포츠 및 뮤직 이벤트, 놀이공원, 카운티페어, 벼룩시장 및 무역 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 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경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자격이 있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학부모-교사 단체의 판매.* 해당 조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8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s\)](#)를 참조하십시오.
- *현장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 고객이 추가로 조리해야 하거나, 일반적으로 1인 소비용이 아닌 크기로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은 '현장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굽지 않은 피자, 쿠키 도우, 잼 캔, 빵 한 덩어리 판매 시 고객이 추가로 조리해야 하거나 해당 제품이 일반적으로 1인 소비용이 아닌 크기로 판매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자 샐러드 1쿼트, 아이스크림 1쿼트 또는 파이 1판은 일반적으로 1인이 소비하는 양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예시는 [규정 1603 과세 식품 매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상세한 내용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의 예시로는 국립 및 주립 공원, 캠프장 및 RV 공원, 회원권 또는 학생 카드를 사용해 입장하는 장소, 골프장과 볼링장처럼 구경만 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는 장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가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부 식품 매출은 과세 대상인 반면 일부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양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매출 과세 관련 자문은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무료 식음료—호텔 및 유사 숙박 시설

### 이 섹션을 읽어야 할 대상은?

이 섹션은 호텔, 모텔, B&B 인 또는 기타 숙박 시설을 운영하고 객실 임대 일부로 투숙객에게 무료 식음료를 제공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American Plan 호텔.** 이 섹션에서 제공된 정보는 객실 투숙, 모든 식사 및 서비스에 대해 고정 일일 요금을 부과하는 American Plan 호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 및 유사 시설에 적용되는 조항이 American Plan 호텔의 식사 매출에도 적용됩니다(식당, 바, 호텔 및 유사 시설 참조).

**기관의 판매.** 병원과 같은 기관의 식사 및 식품 판매 관련 정보는 [간행물 45,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을 참조하십시오. 62세 이상의 콘도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식품 관련 정보는 [규정 1603, 과세 식품 매출을 참조하십시오](#)

### 무료 식음료

다음과 같은 경우 '무료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무알코올 음료 알코올 음료를 비롯한 식음료를 투숙객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하는 경우
- 투숙객 청구서에서 객실 요금과 식음료 요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 투숙객이 식음료를 거절하고 객실 요금 할인을 대신 받을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세금의 일반적 적용

숙박 시설을 운영하며 상기 설명과 같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소비자 또는 소매업체로 간주됩니다.

**소매업체인 경우** 투숙객에게 판매한 식음료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비자인 경우** 투숙객에게 판매한 식음료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제품 구입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알코올 음료 및 탄산 함유 음료(예: 탄산음료 또는 탄산수) 등의 비식품 제품
- 재사용 불가한 용기 및 식음료와 함께 기타 제품(예: 테이크아웃 상자, 종이컵 및 플라스틱 식기 등)
- 외부 공급업체 또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 식품인 식재료 구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료 식음료 소비자 또는 소매업체에 해당하십니까?

다음 의사결정표는 무료 식음료의 소매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수학 공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는 소매업체로 간주되며 의사결정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투숙객이 허용되는 무료 식음료 이상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예: 와인 한 병 추가로 구매.
- 투숙객 아닌 고객이 '무료' 식음료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상기 예시의 경우 귀하는 식당, 바, 호텔 및 유사 시설의 내용에 따라 식음료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임대한 객실 수란 객실 수익이 '총 객실 수익'에 포함되는 경우 1박 기준으로 모든 객실이 임대된 총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투숙객 한 명이 3박 연속으로 객실을 임차한 경우 ADR 계산 시 해당 객실은 3회 임대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 3단계: 공식 적용

2단계에서 도출된 값을 1단계의 값으로 나눕니다. 공식의 결과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식음료 원가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귀하는 소매업체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됩니다. 결과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소매업체로 간주되며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유사 식품의 공정 소매가를 기반으로 측정된 세금이 매출에 부과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유사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무료 식음료 원가에 최소 100% 이상 이익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예시:

다음 예시는 공식의 적용 사례를 보여줍니다.

1단계: 평균 일일 요금(ADR)을 결정합니다

\$257,000 (총 객실 수익)

2,252 (1년 동안 임대한 객실)

$\$257,000 \div 2,252 = \$114.12(\text{ADR})$

2단계: 무료 식음료의 평균 소매가(ARV)를 결정합니다

\$4,166.00 (무료 식음료 원가)

+ 4,166.00 (100% 이익 가산)

\$8,332.00

$\$8,332.00 \div 2,252\text{객실} = \$3.70(\text{ARV})$

3단계: 평균 소매가(ARV)를 평균 일일 요금(ADR)으로 나눕니다.

$\$3.70 \div \$114.12 = 3.24\%$

이 예시의 경우 비율이 10% 이하이므로 호텔은 소비자로 간주됩니다.

## 기타 세금 문제

### 직원 식사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해당 식사에 대한 특별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식사 요금은 과세 대상이며,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직원은 소비한 식사에 현금을 지불합니다
- 식사 대금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기준을 맞추도록 현금 대신 식사가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 직원은 소비하지 않은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직원의 급여세 목적으로만 식사 대금이 설정된 경우 부과되는 특별 요금은 없습니다.

### 호텔 미니바 매출

호텔 고객에게 임대한 객실 및 스위트룸의 미니바에는 일반적으로 호텔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탄산음료, 주류 및 다양한 간식류가 있습니다. 체크아웃 시 미니바에서 소비한 품목에 대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판매된 품목이 차가운 식품인 경우 호텔 투숙객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탄산음료, 주류 등의 비식품 품목의 매출은 호텔 미니바 또는 호텔의 기타 장소 중 어디서 판매되든 과세 대상입니다.

### 시설 요금

#### 식당이나 호텔 외의 소매업체가 부과하는 시설 요금

소매업체가 정기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식음료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너리, 동물원, 미술관, 박물관, 컨트리클럽 또는 아쿠아리움은 결혼식, 생일 파티, 또는 퇴직 파티 등의 고객 행사를 위해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제공 행사 개최 시 소매업체의 시설 요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행사 중 식품 및/또는 음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주체가 소매업체(시설 소유자)인지 혹은 소비자(예: 외부 케이터링 업체 이용)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소매업체(시설)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요금

일반적으로 시설(정기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음)을 갖춘 소매업체가 행사를 위해 식음료 공급 및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중 식음료 제공이 주목적인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시설 요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매업체는 식당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시설 사용료는 식음료 판매의 일부입니다.

예시:

*와이너리에 결혼식 피로연을 위해 설계된 안뜰 공간이 있으며, 와이너리는 고객의 결혼식 피로연(행사)을 위해 식음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일시불로 청구하여 체결합니다. 와이너리의 안뜰에는 결혼식 피로연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며 와이너리는 식음료 외에도 모든 식기, 린넨, 유리잔 등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와이너리는 식당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별도로 요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와이너리 안뜰 사용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체가 시설에서 식음료를 공급하고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식음료 제공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분리된 다른 공간을 고객에게 임대한 경우, 식음료 제공과 관련 없는 분리된 공간 사용료는 송장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시설 요금에는 신랑·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장소에 대한 요금이나 신랑·신부가 결혼식 당일 밤에 투숙할 객실 요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전 예시와 동일한 시나리오(즉, 와이너리에서 고객의 결혼식 피로연을 위한 식음료 공급 및 제공 계약 체결)이나, 결혼식 당사자들에게 분리된 예식 진행 공간도 임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당 공간은 안뜰과 분리되어 있으며 예식 진행 공간에서 식음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와이너리는 식음료 제공과 관련 없는 해당 공간 사용료를 별도로 명시합니다. 예식 공간의 주된 목적은 식음료 제공이 아니므로 별도로 명시된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식음료가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요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행사의 주목적이 식음료 제공인 행사에 대해 소매업체가 시설 사용료로 부과하는 요금은 소매업체가 행사에서 음식 또는 음료 중 하나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시:

와이너리는 결혼식 피로연에 적합하게 설계된 안뜰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결혼식 피로연에서 와인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피로연 중 음식을 공급 및 제공하기 위해 와이너리와 관련 없는 케이터링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와이너리가 행사 중 와인을 공급 및 제공하므로 와이너리의 안뜰 사용에 대한 시설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외부 케이터링업체에서 음식을 공급 및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요금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의 전시와 같이 사업의 통상적 범위에서 해당 시설이 주로 식사 또는 식음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더라도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소매업체가 행사를 위해 식음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의 주목적이 식음료 제공인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 사용 요금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시:

박물관은 구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파티에 사용 가능한 별도의 건물 및 전시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퇴직 파티를 위해 카페테리아에서 식음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박물관의 건물은 일반적으로 전시에 사용되지만 행사의 주목적은 식음료 제공이므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시설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고객이 식음료를 공급하거나 케이터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시설 요금**

경우에 따라 소매업체가 정기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데 시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음료 준비 및 제공 없이 행사를 위해 시설만을 임대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객이 행사를 위한 식음료를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소매업체와 관련 없는 케이터링 업체를 고용하여 행사 중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체가 고객과 시설 사용만을 계약하는 경우 소매업체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업체가 행사 중 식음료를 준비하고 제공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식당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매업체는 단지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며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된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고객이 은퇴 파티를 위해 동물원의 일부 구역을 대여합니다. 고객은 케이터링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동물원에서 행사(은퇴 파티)를 위한 식사와 음료를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케이터링 업체는 식음료 공급 외에도 테이블, 의자, 린넨 및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릇, 유리잔, 식기 등도 공급합니다. 이는 시설 임대로 간주되며 행사 중 동물원에서 식음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물원이 고객에게 부과한 은퇴 파티를 위한 시설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팁, 서비스 요금 및 입장료

### 팁 및 서비스 요금

팁 및 서비스 요금이 전적으로 고객 선택에 따라 지불되어 직원이 해당 금액을 갖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청구서에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 혹은 서비스가 포함된 식사, 식음료 판매에 따른 실제 지불 예정 금액에 추가로 별도의 금액을 남길 경우 팁 및 서비스 요금의 지불은 선택 사항입니다.

반면 필수 '팁' 또는 필수 서비스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연회가 열리는 경우 사전에 동의받은 팁은 자발적인 팁이 아닌 필수 팁으로 간주되며,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 연회 계약서에 '권장 팁은 15%'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객이 행사 전에 해당 금액 또는 협상된 다른 금액에 동의할 경우 팁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15](#), *팁 및 서비스 요금(Tips, Gratuities, and Service Charges)*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입장료

고객이 식음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입장료는 실제로 고객이 해당 입장료를 돌려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제공 장소의 입장권이나 티켓만을 위해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메뉴 1개 가격으로 2개 제공

고객이 할인가로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1+1 쿠폰 또는 기타 할인 쿠폰이나 카드를 받은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판매 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식당에서 외식 프로모션으로 가격이 \$12인 메뉴 2개를 1개 가격에 제공하고, 메뉴 2개의 총 금액인 \$12를 고객에게 부과합니다. 세금은 선택 사항인 팁이 붙기 전 총 금액인 \$12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식당에서 가격이 각각 \$15, \$11인 메뉴를 제공하고 고객이 쿠폰을 제시합니다. 해당 쿠폰에는 메뉴 2개 구매 시 더 저렴한 가격의 메뉴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메뉴 2개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15입니다. 세금은 선택 사항인 팁이 붙기 전 총 금액인 \$15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객은 메뉴 정가의 50% 할인을 제공하는 외식 프로모션을 사용합니다. 단 해당 프로모션의 최대 할인 금액은 \$4입니다. 고객은 가격이 \$10인 메뉴를 주문하고 \$4 할인을 받습니다. 세금은 선택 사항인 팁이 붙기 전 부과된 메뉴 금액인 \$6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프로모션 시행사가 외식 프로모션으로 환급을 제공할 경우, 환급액은 과세 대상이며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에 전체(총) 매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 사용된 쿠폰에 대해 프로모션 기관에서 \$2를 환급받으면, 판매세는 \$14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12에 프로모션 기관에서 받은 \$2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프로모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13](#), *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Coupons, Discounts and Rebates)*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판매세 환급

귀하는 과세 대상 소매 매출에 대한 판매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지만,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해당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품목 또는 특정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의 판매가에 판매세가 추가된다는 통지가 메뉴판 또는 광고 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인쇄물에 포함된 경우

- 판매세가 매출 전표 또는 기타 매출 증빙 문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 판매 계약서에 판매세 추가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작성된 경우
- 시설에서 구매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세액을 게시한 경우

### 통지문 게시 요건

일부 바 운영자는 바에서 판매 및 소비되는 음료 가격에 판매세를 포함하지만, 웨이터가 테이블이나 시설 내의 다른 곳에서 음료를 제공할 때 별도로 명시된 금액으로 해당 세금을 추가합니다.

바, 칵테일 라운지 및 식당이 포함된 시설 전체에서 세금 포함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하고 판매세 포함 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귀하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지문을 시설 내에 게시하면 CDTFA는 총 판매 가격에 판매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과세 대상 품목의 가격에는 가장 근접한 밀(mill) 단위까지 계산된 판매세 환급금이 포함됩니다.*

바 및 칵테일 라운지에서만 혹은 바에서 만 세금 포함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통지문이 적용되는 공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내용과 유사한 통지문을 음료가 제공되는 공간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테이블 혹은 다른 곳에서 웨이터가 제공하는 음료 가격에 별도로 세금을 추가할 경우,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메뉴판에 포함하거나 테이블에 비치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식음료 품목의 가격에 판매세가 추가됩니다.*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 유형의 음료를 세금 포함 가격 및 세금 부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각 세금 환급 방식에 의거하여 매출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경우

판매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자에게 반환하거나 주에 납부해야 합니다.

### 오늘의 특가 상품

Groupon 또는 LivingSocial 등 서드파티 인터넷 기반 회사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오늘의 특가 상품(DDI: Deal-of-the-Day Instruments)를 제공합니다. 특정 약관 및 조건이 있는 DDI는 소매업체 쿠폰으로 간주되며 소매업체는 DDI 발행자로 간주됩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DDI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DDI가 과세 대상 제품/서비스(예: 따뜻한 식품 또는 소매업체의 사업장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식품)로 교환되는 경우, 고객이 DDI 구매 시 지불한 대가와 더불어 판매 시점에 고객이 소매업체에 지불한 현금, 크레딧 및 기타 지불 대가가 과세 대상 총 수입에 포함됩니다. 판매 유형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DDI를 교환할 때 제품 및/또는 서비스 판매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13](#), 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Coupons, Discounts and Rebates)를 참조하십시오.

### 재고 관리

바 및 식당 소유자는 재고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부정확한 재고 처리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재고 관리는 추가 과세의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사업 운영자는 고객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매를 위한 구매 기록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재판매용이 아닌 소모품이나 기타 품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재고 손실을 방지하려면 제품을 구매한 시점부터 제품이 판매 또는 사용될 때까지 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재고 관리-바 운영자

적절한 재고 관리에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송된 모든 품목을 확인하고 물품 인도 시 바 매니저가 있어야 합니다.
- 대량으로 구매한 주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창고에 보관합니다. 창고 열쇠는 바 주인, 매니저 또는 지정된 기타 담당자만 소유합니다.
- 창고에서 반출되는 주류는 반출 시점에 기록됩니다.
- 모든 바 제품의 재고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전수조사하고 판매된 주류의 계산된 원가를 설정된 목표 원가율과 비교합니다.
- 송장에 표시된 구매 내역은 브랜드별로 재고 카드에 기록하고 판매를 위해 바로 반출될 때 카드에 반출 내역을 표시합니다. 이로써 빈번히 조사하여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계속기록법이 적용됩니다.
- 각 바에 대한 바 스케줄을 설정합니다. 바 스케줄은 각 바에서 지속적으로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 브랜드별 주류를 숫자로 명확히 표시하여 구성합니다(예: Cutty Sark 4쿼트, Bar Vodka 12쿼트, Gran Marnier 1병 등).
- 모든 빈 병은 바에 보관합니다. 바 매니저, 주인 또는 담당자는 창고에서 같은 브랜드의 새 병을 가져와 빈 병의 자리를 채웁니다.
- 잠금장치가 있는 연회장 또는 서비스 바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연회장 바를 잠그지 않은 경우 연회가 시작되기 앞서 매번 종류별로 예정된 주류 개수를 채우고 이 치워야 합니다.

## 도난,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품 손실

절도, 강도, 내부 절도,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손실의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손실 추적을 위해 고용된 사설 기관의 보고서, 경찰 보고서, 보험 청구서 또는 증빙 문서 등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매세는 매출에 따라 산정되므로 현금 도난은 판매세 목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판매 수익금 손실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 매출에 대한 판매세는 일반적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 바와 식당의 영수증 및 구매 내역을 구분 없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바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식당 운영의 모든 구매 내역 및 매출은 바 운영 장부 및 기록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와 식당은 수익 마진이 다릅니다. 매출 및 제품 원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목표 총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누손이나 도난을 발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 무료 식사 및 음료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료 음료 및 직원이 소비하는 음료에 관한 정책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또한 무료 제품에 대한 기록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을 보관해야 할 몇 가지 적절한 근거가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있어 사업주의 통제력이 대폭 향상됩니다.
- 귀하는 무료 식사 및 음료의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간주되므로, 결국 무료로 제공되는 비식품 품목(예: 알코올 함유 음료 및 탄산 함유 청량음료)의 원가에 붙는 세금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 반품 시 보고하는 금액의 근거가 되므로 추정치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기록 유형은 무료 식사 또는 음료 제공 시 준비한 메모 매출 전표에서 매일 관리되는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제공되거나 소비된 과세 대상 품목의 총 원가가 계산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자체 소비 제품으로 포함됩니다. 자체 소비 제품은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의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 항목으로 보고됩니다. 산정 수치가 표시된 모든 기록을 보관합니다.

## 가격 변동 및 '해피아워'

가격 변동, 잔 크기 변경, '해피아워' 중 매출 또는 일반적인 가격 책정 관행과 다른 사항에 대한 증빙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이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감사인은 기록된 매출이 기본적으로 정확한지 파악하기 위해 '이익 가산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 및 잔 크기 변경은 해당 테스트의 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록을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잔 크기 변경.** 다른 크기의 잔이 처음 사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날짜가 표시된 구매 송장을 보관합니다.
- **가격 변동.** 이전 메뉴판을 보관하거나 기록용 문서에 적어두어 가격 변동 및 변동 날짜를 표시합니다. 금전등록기 테이프 또는 송장은 증빙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 **해피아워.** '해피아워'는 일반 영업 시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하는 기간입니다. 메뉴판, '해피아워' 판매 표지판, '해피아워' 기간의 매출이 표시된 금전등록기 테이프를 보관합니다. 이는 사업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입량.** 관리 절차의 일환으로 칵테일(온더락 및 온더스팀 모두)에 주입되는 알코올의 양을 정합니다.

## 온라인 주문 서비스

귀하가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관계가 존재한다면 귀하는 식사 매출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식당은 고객의 주문을 받고, 대금을 수령하고, 경우에 따라 식사를 배달하는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식당과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 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각각의 책임을 적절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가 식당의 대리인으로 식사 홍보, 주문, 배달을 담당하는지 혹은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가 재판매를 위해 식사를 구매하는지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가 식당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식당은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식사의 소매업체로 간주되며, 서비스 공급업체 취득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해당 판매의 전체 판매가를 기반으로 산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당과 온라인 주문 서비스 공급업체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공급업체는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소매업체로 간주되며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통한 식사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식당 주인은 재판매를 위해 식사를 구매하는 온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의 재판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취득 조건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간행물 73](#),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을 참조하거나 1-800-400-7115(CRS: 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

캘리포니아주에서 제품 또는 기타 개인 유형자산을 판매 또는 대여할 경우(일시적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귀하는 CDTFA에 등록하여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하여 과세 대상 매출에 대한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타주 공급업체에서 구매한 내역 또는 판매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품목의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

식음료 산업의 대부분 사업체는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취득 조건에 대한 지원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간행물 73](#),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을 참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매출 축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장치

매출을 숨기거나 제거하고 기록을 위조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고의로 판매, 구매, 설치, 양도 또는 소유할 경우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갖게 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및 최대 \$10,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불법 미납 세금 및 벌금, 관련 이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나열된 리소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30~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사무소

CDTFA 웹사이트

( [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http://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에서 모든 사무소 위치가 포함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1-800-400-7115 (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인터넷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이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예: 법률, 규정, 양식, 간행물, 산업 가이드 및 정책 안내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확인\(Verify a Permit, License, or Account\)](#)참조).

간행물의 다국어 버전은 웹사이트([www.cdtfa.ca.gov/formspubs/pubs.htm](http://www.cdtfa.ca.gov/formspubs/pubs.htm))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용한 다른 리소스는 캘리포니아주 세무 서비스 센터([www.taxes.ca.gov](http://www.taxes.ca.gov))입니다.

## 세금 정보 보고서

분기별로 제공되는 [세금 정보 보고서\(TIB: Tax Information Bulletin\)](#)에는 특정 유형의 거래 시 법률 적용에 관한 글, 새롭게 개정된 간행물 소식 및 기타 관련 글이 실려 있습니다. 웹사이트([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http://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에서 최신 TI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TFA 업데이트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면 TIB 시간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강의 및 세미나

CDTFA는 납세 신고와 관련한 튜토리얼 등 판매세 및 사용세 기본 사항에 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의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특정 강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 서면 세금 자문

보안을 위해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DTFA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서면 자문을 제공하였고, 귀하가 해당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과된 세금, 과징금 또는 이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문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이 모두 설명되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세·수수료 정보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하려면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email](http://www.cdtfa.ca.gov/email))에 방문하여 자문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 요청을 서신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목재 제품 평가세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추가세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의 일반 정보를 받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기타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자문은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Program Administration Branch, MIC:3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 납세자 권리 보호

납세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일반적 경로(예: 관리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간행물 70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를 참조하거나 1-888-324-2798로 연락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1-916-323-3319입니다.

원하는 경우 다음 주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 규정, 양식 및 간행물

### 간행물별로 목록이 다릅니다.

귀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규정, 양식, 및 간행물**의 발췌 목록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판매세 및 사용세 규정, 양식, 및 간행물의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간행물 및 기타 다국어 지원 자료의 다국어 버전도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규정

- 1506 기타 서비스 기업(*Miscellaneous Service Enterprises*)
- 1597 특정 비영리 단체에서 양도 또는 매각한 자산(*Property Transferred or Sold by Certain Nonprofit Organizations*)
- 1602 식품(*Food Products*)
- 1603 과세 식품 매출(*Taxable Sales of Food Products*)
- 1660 일반적인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In General*)
- 1668 재판매를 위한 판매(*Sales for Resale*)
- 1669 재판매를 위해 보유한 자산의 실연, 전시 및 사용—일반(*Demonstration, Display, and Use of Property Held for Resale—General*)
- 1698 기록(*Records*)
- 1700 판매세 환급(*Reimbursement for Sales Tax*)
- 1821 서문—지방세(*Foreword—District Taxes*)

### 간행물

- 17 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Appeals Procedures: 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 and Fees*)
- 18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 44 지방세(*District Taxes*)
- 45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 46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 51 중소기업을 위한 과세 제품 및 서비스 자료 안내서(*Resource Guide to Tax Products and Services for Small Businesses*)
- 61 판매세 및 사용세: 면세 및 제외(*Sales and Use Taxes: Exemptions and Exclusions*)
- 68 사진 작가, 사진 보정가 및 사진 인화실(*Photographers, Photo Finishers, and Film Processing Laboratories*)
- 70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
- 73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Your California Seller's Permit*)
- 74 계정 해지(*Closing Out Your Account*)
- 75 이자, 벌금 및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Interest, Penalties, and Collection Cost Recovery Fee*)
- 76 감사(*Audits*)
- 102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Sales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103 재판매를 위한 판매(*Sales for Resale*)
- 113 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Coupons, Discounts and Rebates*)
- 115 팁 및 서비스 요금(*Tips, Gratuities, and Service Charges*)
- 116 판매세 및 사용세 기록(*Sales and Use Tax Records*)
- 126 서비스 기업을 위한 필수 사용세 등록(*Mandatory Use Tax Registration for Service Enterprises*)

The Sale of Tobacco Products to Persons Under 21 Years of Age Is Prohibited by Law and Subject to Penalties

To Report an Unlawful Tobacco Sale Call  
**1-800-5 ASK-4-ID**

Valid Identification May Be Required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6052, 21 (U.S.C. 5871f)  
This sign must be readable by the consumer and must not be altered, covered or obliterated in whole or in part.



Open camera or QR code reader on your smartphone.  
Hold your smartphone over QR code so that it's clearly visible within camera's view.  
Look for the instruction banner or watch trigger code's action.

## 80/80 규칙 테스트

테이크아웃 판매 식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테이크아웃 판매 시 80/80 규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80/80 규칙이 적용됩니다.

- 총 수입의 80% 이상이 식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경우
- 소매 식품 매출의 80% 이상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인 경우. 예를 들어, 식사로 제공되는 식품, 귀하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된 따뜻한 조리 식품, 또는 드라이브인으로 정의된 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준 부합 여부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식당은 해당 기준에 부합합니다. 또는 아래 표를 활용한 보다 면밀한 매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80/80 규칙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차가운 식품의 테이크아웃 주문 판매는 별도로 평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80/80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테이크아웃 매출의 설명에 따라 즉시 세금 신고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을 모니터링하고 90일마다 매출을 다시 평가하여 상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0일 테스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을 경우 80/80 규칙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90일 테스트	식품 매출		총계		총 매출
	과세	비과세	식품 매출	비식품 매출	
따뜻한 조리 식품	\$85,000				
<b>차가운 식품</b> (예: 콜드샐러드, 우유) 테이크아웃 판매 판매자의 시설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	4,000	5,000			
<b>비식품 품목</b> (예: 탄산음료 및 주류, 담배, 기념품)				\$6,000	
<b>총계</b>	<b>\$89,000</b>	<b>\$5,000</b>	<b>\$94,000</b>	<b>\$6,000</b>	<b>\$100,000</b>

참고: 알코올 및 탄산음료를 식품 매출의 일부로 산입하지 마십시오. 알코올 및 탄산음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기 예시에서 소매업체 매출의 80% 이상이 식품 매출이며( $\$94,000 \div \$100,000 = 94\%$ ), 식품 매출의 80% 이상이 과세 대상이므로( $\$89,000 \div \$94,000 = 95\%$ ) 해당 소매업체에 80/80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0/80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테이크아웃 판매 섹션에 설명된 대로 판매자가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는 차가운 식품에 대한 특별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판매자의 시설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80/80 규칙에 따라 매출을 평가할 경우 각 지점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베이커리 식당 또는 푸드코트 지점 등의 복합 지점은 매출 내역이 장부와 기록에서 분리되어 있더라도 상기 계산 목적에 따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팔로우



간행물 22-K | 2022년 4월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A 우편 주소: P.O. BOX 942879 • SACRAMENTO, CA 94279-0001